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순창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22	1,027	1	1	8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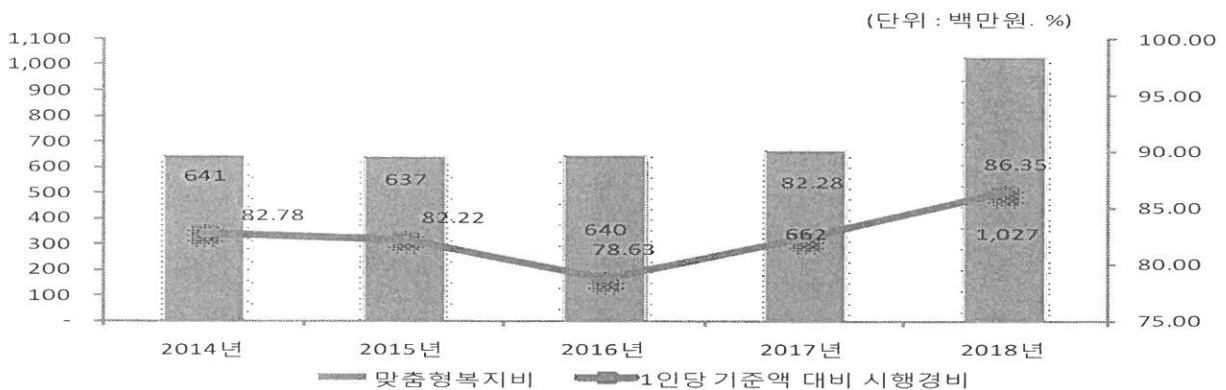
-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 (A)(명)	803	803	844	834	92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641	637	640	662	1,02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2.78	82.22	78.63	82.28	86.3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 맞춤형 복지제도를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에게도 제공하여 대상 인원 증가에 따른 시행경비 증가